

Extension of COVID-19 incentives ^{P1}

Update on COVID-19 related LST incentive on cars ^{P3}

Update on COVID-19 related VAT incentives on landed houses and residential units ^{P4}

Exemption of Stamp Duty ^{P5}

COVID-19 세제혜택의 연장

2021년 1월 25일 재무부장관(MoF)은 이전 MoF 규정¹ (Tax Flash No. 04/2021 및 Tax Flash No. 21/2021 참조)에 따라 제공된 COVID-19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PMK-3² 을 발표했습니다.

PMK-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세혜택만 연장됩니다:

1. 적격 납세자의 수입에 따른 Article 22 소득세는 면제;
2. 적격 납세자의 Article 25 월별 소득세 분할납부액은 50%가 감면;
3. 관개 용수 활용 촉진 프로그램(*Percepatan Peningkatan Tata Guna Air Irigasi/ P3 - TGAI* 프로그램)에 따라 납세자가 받는 건설 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의 정부 부담.

Article 21 종업원 소득세, 중소기업에 대한 0.5% Final Tax 및 부가세 조기 환급과 같은 기타 조세혜택은 PMK-3에 의해 연장되지 않습니다.

일반적인 규정과 행정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PMK-3에 따라 신규로 업데이트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조세혜택 기간의 연장

이전 규정에 따른 조세혜택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였으나, 연장신청을 하는 납세자에 한하여, 2022년 6월까지 조세혜택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¹ MoF Regulation No.9/PMK.03/2021 (PMK-9)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.149/PMK.03/2021 (PMK-149)

² MoF Regulation No.3/PMK.03/2022 (PMK-3) dated and effective from 25 January 2022

조세혜택 연장을 위한 신고/신청

PMK-149에 따라 개정된 기존의 PMK-9 규정상의 조세혜택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PMK-3에 따른 Article 22 및 Article 25 소득세 혜택을 위해 신고서/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
2022년 1월부터 Article 25 소득세 조세혜택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늦어도 2022년 2월 24일까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월별 신고 의무

Article 22 및 Article 25 소득세 혜택 적용 대상 납세자는 익월 20일까지 월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P3-TGAI 공사 매출에 대한 Final Income Tax 적용 납세자도 월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PMK-3는 2021년 신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정사항과 함께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국세청(DGT)의 전자신고 사이트에 상기 월별 신고서 및 PMK-149에 따라 개정된 종전 PMK-9 규정상 관련 수정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코드를 생성하지 않아도 해당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적격 납세자

납세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시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:

- 납세자의 업종코드(Klasifikasi Lapangan Usaha/KLU)가 DGT 마스터 파일에 등록되어 있고 PMK-3 별첨에 열거되어 있음;
- 납세자가 2020 사업연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에 따라 신고한 경우(Article 22 및 Article 25 조세혜택 적용 관련 사항).

하기 조세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PMK-3 별첨에 열거된 적격 납세자의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(PMK-3 별첨 참조):

- a. 수입 관련 Article 22 소득세 – KLU가 397 개에서 72 개로 축소;
- b. Article 25 소득세 – KLU가 481 개에서 156 개로 축소.

납세자는 PMK-3 별첨 리스트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특정 KLU에 따른 조세혜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[PMK-3](#)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규정

KLU에 변경 사항이 있어 납세자가 위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(즉, DGT의 마스터 파일에 등록되지 않고 PMK-3의 첨부 파일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), 기존에 적용 받은 조세혜택은 더 이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
차량에 대한 LST 관련 COVID-19 조세혜택 업데이트

재무부 장관은 PMK-31³에 따라 이전에 규정되었던 차량에 대한 사치세 (LST) 조세혜택을 개정하는 Regulation No.PMK-5⁴ 를 발표했습니다.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. PMK-31 관련 사항은 [TaxFlash No.09/2021](#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요건

LST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a. 산업부(MoI)가 지정한 저비용 친환경 범위에 속하는 4륜 자동차이면서
 - 연료 소비량이 리터 당 최소 20km 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r/km이면서 실린더 용량이 최대 1,200cc인 점화엔진; 또는
 - 연료 소비량이 최소 리터당 21.8km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0gr/km이면서 실린더 용량이 최대 1,500cc인 압축점화엔진(디젤 또는 세미디젤).
- b. 실린더 용량이 최대 1,500cc인 10인승 미만 탑승차량이며
 - 연료 소비량이 리터 당 최소 15.5km 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0gr/km 점화엔진; 또는
 - 연료 소비량이 최소 리터 당 17.5km이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0gr/km인 압축점화엔진(디젤 또는 세미디젤).

상기 모든 차량은 최소 80% Local Contents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차량 가격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상기 (a)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: 최대 2억 루피아;
- 상기 (b)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: 2억 루피아 - 2.5억 루피아 범위내.

현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산업부령에 따라 지정됩니다.

혜택

동 조세혜택은 정부가 LST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정부가 부담하는 LST 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상기 (a) 해당 차량:
 - 2022년 1월 ~ 3월까지 100% 부담
 - 2022년 4월 ~ 6월까지 66 ²/₃ % 부담
 - 2022년 7월 ~ 9월까지 33 ¹/₃ % 부담
2. 상기 (b) 해당 차량: 2022년 1월 ~ 3월까지 50% 부담

³ MoF Regulation No.31/PMK.010/2021 (PMK-31)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.120/PMK.010/2021.

⁴ MoF Regulation No.5/PMK.010/2021 (PMK-120)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2.

기타

행정절차 등의 요건은 주로 종전 재무부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다만, 동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2022년 1월 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재발행이 필요합니다. 또한, LST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해당 LST를 원천징수한 부가세 사업자가 관련 과다납부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.

주택 및 주거용시설에 대한 VAT Covid-19 조세혜택 업데이트

재무부장관은 최근 주택 및 주거용 시설(*unit hunian rumah susun*)에 대한 VAT 조세혜택의 연장에 대한 Regulation No.PMK-6⁵을 발표하였습니다. PMK-6은 기존의 MoF Regulation No.PMK-103⁶을 대체하는 규정입니다([Tax Flash No.16/2021 참조](#)).

조세혜택, 적용요건 및 행정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MoF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며, 일부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적용됩니다.

- 조세혜택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- 2021년에 관련 조세혜택을 사용한 개인납세자에 대해서 2022년에도 동 조세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조세혜택 적용 기간 중 적용되는 대상 자산에 대한 VAT는 정부가 부담할 것이며 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 - a. IDR 20억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되는 자산에 대한 VAT의 50%(종전 100%); 및
 - b. IDR 20억 초과 50억 이하 금액으로 판매되는 자산의 VAT에 대해 25%(종전 50%)
- 해당 혜택은 2021년 3월부터 조세혜택 적용 기간 종료일까지 납부한 금액 또는 할부액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판매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 등록해야 하며, 등록 시 완성된 주택 및 주거시설의 재고, 조세혜택 제공 기간 중 완공될 건설중인 자산 및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양도되지 않은 PMK-103에 따른 적격 자산은 실제 양도거래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한 PMK-6에 따른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동 규정에 따라 변경된 조세혜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세금계산서가 대체되어야 하며 2022년 10월 31일까지 부가세 수정신고서 상 신고해야 합니다.

⁵ MoF Regulation No.6/PMK.010/2022 (PMK-6)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2

⁶ MoF Regulation No.103/PMK.010/2021 (PMK-103) dated and effective from 30 July 2021

Stamp Duty 면제

2022년 1월 12일, 정부는 Stamp Duty Law⁷에 따라 Stamp Duty가 면제되는 특정 네가지 유형의 문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GR-3⁸을 발표하였습니다.

천재지변으로 인한 L&B(토지 및 건물) 양도 문서

정부의 자연 재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비상 상태를 허가 받은 L&B 권리 이전 관련 문서는 Stamp Duty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Stamp Duty 면제는 토지의 자연재해 관리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.

종교적이거나 비상업적 활동을 위한 L&B 권리 이전 관련 문서

종교/사회 기관에게 허가 또는 공증의 허가를 통해 L&B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 또는 종교/사회기관이 L&B 권리를 구매하는 경우 Stamp Duty가 면제됩니다. GR-3은 예배 장소를 돌보거나 종교 관련 활동을 조직하는 일이 주 사업활동인 비영리 법인을 종교기관으로 정의하는 반면 사회기관은 노인이나 고아를 돌보고 자연재해 피해자를 보상하는 등의 활동을 주요 사업범위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정부 프로그램 및 통화/금융 정책 이행에 관한 문서

소액 증권거래에 관련한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Stamp Duty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- a. 다음의 문서에 대해 최대 IDR 5 백만:
 - 1차 발행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할당 확인 서식;
 - 대체 시장 운영자를 통해 수행되는 문서;
 -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통해 수행되는 문서.
- b. 다음의 문서에 대해 최대 IDR 1 천만:
 - 증권거래소에서 수행되는 거래확인서;
 - 집합투자계약 형태의 투자상품참여단위별 구매 확인문서.

국제협정 이행에 관한 문서

Stamp Duty 면제는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.

- 국제기구 및 해당 대표자; 또는
- 해외 국가의 대표 및 정상.

관련 기관 및 대표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Stamp Duty가 면제됩니다.

⁷ Law No.10 Year 2020 dated on 26 October 2020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1

⁸ Government Regulation No.3 Year 2022 dated and effective from 12 January 2022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isni Jesica
hisni.jesica@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kma Alam
sukma.alam-c@pwc.com

Amit Sharma
amit.xz.sharma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rendro Supriyadi
surendro.supriyadi-c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lina Kamal
marlina.kamal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vinash Rao
a.rao@pwc.com

Nicholas Sugito
nicholas.sugito@pwc.com

Tim Watson
tim.robert.watson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Nikolas Handradjid
nikolas.handradjid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www.pwc.com/id

 PwC Indonesia

 @PwC_Indonesia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2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